



삼급살

정보공개서

(주)삼급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삼급살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22117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2.05.1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5.21.

삼급살 가맹사업본부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구로 23, 102호

대표번호

055-387-9254

이메일

zs0657@naver.com

팩스번호

0504-019-2598

홈페이지

www.삼급살.com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5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삼급살] 가맹사업 현황	9
1. [삼급살] 을 시작한 날	
2. [삼급살] 연혁	
3. [삼급살] 업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삼급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바로 전 3년간 [삼급살] 가맹점 수	
6. [삼급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삼급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4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5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1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6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8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0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42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별첨서류

- [별첨1]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 [별첨2] 가맹금예치신청서
- [별첨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별첨4]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가맹본부의 일반현황****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삼급살	삼급살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구로 23, 102호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07.20.	2023.08.01.	남성훈	055-387-9254	0504-019-2598
	법인등록번호	234111-0138060	사업자등록번호		218-81-2589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임원)	남성훈	삼급살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구로 23, 102호		
	남지훈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남성훈	055-387-9254	0504-019-259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였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삼급살	삼급살	2023.08.0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화합 8길 15, 1층	남지훈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삼급살	삼급살은 삼겹살 전문점입니다.
상 호	삼급살 00점	보통 지역명으로 표시
상 표		삼급살브랜드의 로고, 심볼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자료는 [별첨1] 참조.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465	-	465	0	-534	-534
2022년	100,832	29,708	71,123	552,712	87,753	95,589
2021년	30,667	27,133	3,533	461,034	89,423	94,939

※ 당사는 2023년 8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상기한 2021~2022년도의 재무정보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일 때의 재무정보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	----	------	------

관련여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남성훈	대표이사	2019.12.18 ~ 2023.07.30	삼급살 부대표	운영부문 총괄
			2023.08.01. ~ 현재	(주)삼급살 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남지훈	사내이사	2019.12.18 ~ 2023.07.30	삼급살 대표자	가맹사업 총괄
			2023.08.01. ~ 현재	(주)삼급살 사내이사	운영부문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직전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0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일자	번호	출원인	존속기간 만료일
 삼급살	가맹계약상 약정한 범위내에서 사용	출원일 2020.11.13. 등록일 2022.03.28.	출원번호 40-2020-0205055 등록번호 40-1849-7350000	남지훈	2032.03.28.

※ 당사는 출원인으로부터 삼급살 가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삼급살] 가맹사업현황

1. [삼급살] 을 시작한 날: 2020.03.19.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9.12.18.)

2. [삼급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삼급살	삼급살	남지훈	2020.03.19. ~ 2023.07.3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화합8길 15, 1층
(주)삼급살	삼급살	남성훈	2023.08.01. ~ 2024.02.27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화합8길16, 203호
(주)삼급살	삼급살	남성훈	2024.02.28. ~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구로 23, 102호

3. [삼급살]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삼급살	한식	삼겹살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삼급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3.12.31.			2022.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0	20	-	9	8	1	5	4	1
서울	-	-	-	-	-	-	-	-	-
부산	15	15	-	6	6	-	2	2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5	5	-	3	2	1	3	2	1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삼급살]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년	8	13	-	1	3	20
2022년	4	4	-	-	1	8
2021년	2	2	-	-	2	4

6. [삼급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삼급살]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 VAT미포함)			비고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평균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0	435,059	13,160	902,997	20,778	171,862	6,874	산출: 17곳
서울	-	-	-	-	-	-	-	-
부산	15	428,154	12,909	902,997	20,788	171,862	6,874	산출: 12곳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5	451,631	13,769	674,775	19,279	282,315	9,410	산출: 5곳
제주	-	-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은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삼급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직전연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영업기간
2023년	20개	517일 (1년 5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지역본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직전연도에 당사가 [삼급살]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판촉행사비는 없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원, VAT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비	-	-	-	-	-	-
판촉비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지점	전화번호
중소기업은행	전지점 및 온라인뱅킹	1588-2588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은행지점 방문시	①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수령 → ② 은행에 방문하여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③ 가맹금예치증서 수령 및 보관
인터넷뱅킹 이용시	①인터넷뱅킹 접속 후 로그인 → ② 부가서비스 -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 - 가맹점사업자 클릭 → ③ 가맹본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④ 가맹본부 확인 → ⑤ 가맹점사업자 정보 입력 및 예치금액 입력 → ⑥ 가맹금 예치완료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상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500만원	계약체결과 동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교육비	500만원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계	1,000만원			

2) 보증금

당사는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구분	금액(VAT없음)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 포함)	
	신규 가입자	양수인
가맹비	500만원	-
교육비	500만원	500만원

합계	1,000만원	500만원
----	---------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82.5㎡기준 (25평)	3.3㎡당 금액			
인테리어	(협력업체)	4,125만원	165만원	계약체결과 동시	발주 또는 시공 전 계약취소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
설비/집기/가구	(협력업체)	1,650만원	66만원			
간판	(협력업체)	550만원	-			
원·부재료	(협력업체)	75만원	-			
	(협력업체)					
	(협력업체)					
	(협력업체)					
	(협력업체)					
총계		6,400만원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항,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상기 비용 외 점포 상황에 따라 내부철거, 닥트, 전면윈도우 및 창호신설, 전기증설, 화장실, 냉/난방, 가스 증설, 소방, 대형건물등의 특수요구사항, 컴퓨터 등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최소 점포 기준 82.5㎡ 이상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점포의 입지선정과 계약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9)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	계약서상 가맹금(가맹비,교육비)의 10%
계약 체결 후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계약서상 가맹금(가맹비,교육비)의 30%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지급대상
로열티	카드매출액의 1.65%	익월 10일까지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 사용대가	가맹본부
지연이자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광고/판촉비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개점 후 교육비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단위 : 천원, VAT 미포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500만원(VAT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 양도양수가 아닌 신규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 교육비와 가맹비 500만원(VAT포함)을 추가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가맹계약서 제34조)
<p>1."을"은 "갑"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한다.</p> <p>2."을"은 "갑"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을"은 협력업체 또는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지원받은 품목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p> <p>4."을"은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하여야 하며, "갑"이 제공한 시스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갑"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p> <p>5."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갑"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을"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는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갑"의 소유이며, "을"은 이를 삭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갑"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직전연도 기준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구입해야하는 주요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판매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재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지정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상품명	권장판매가격(원)	비고
고기류	삼겹살 (소) 500g	43,000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시 아래의 절차를 따름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상품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
	목 살 (소) 500g		
	반 반 (소) 500g		
	삼겹살 (대) 800g	64,000	
	목 살 (대) 800g		
	반 반 (대) 800g		
	삼겹반판(고기추가시) 300g	25,000	

	돼지껍데기 100g	5,000	
	새우버터구이 10마리	12,000	
식사류	된장찌개	5,000	
	라면 (안성탕면/너구리)	3,500	
	비빔면	3,500	
	열무냉국수	6,000	
	옛날도시락 벤또	4,000	
	공기밥	1,000	
	김치찌개	7,000	
주류&음료	소주	4,000	
	맥주	4,000	
	한라산	5,000	
	음료	2,000	
	토닉워터	2,000	
	청하	5,000	

②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삼급살]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 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고 **판매메뉴 및 가격은 상기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하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 점을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삼겹살을 주요상품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	삼겹살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서에 기재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네이버지도-거리측정 기준 귀하의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1KM 또는 지역(구) 1개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의 집합건물을 말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둘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전연도 말 기준 [삼급살]영업표지로 국내에서 판매된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비중이 기재된 채널은 국내 총 매출액에서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한 비중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온라인 전용상품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삼급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 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문 제6조 제2항 (계약갱신 거절 사유)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조문 제6조 (계약기간과 갱신)
<p>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6-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p> <p>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p> <p>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④ 당사가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5.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p>⑥ 귀하는 계약갱신시 다음 각 호를 계약갱신일 전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하는 당사에 대한 원·부재료·상품대금 및 기타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2. 계약갱신시 당사와 귀하는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p>⑦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별다른 의사표시를 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만 1년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자동갱신)</p>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조문 제33조 (계약의 해지)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2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제8조 내지 제15조의 이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 지급에 관하여 “을”이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계약조문 제25조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4조 제2항에서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제4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제8조 및 제9조, 제16조 및 제17조 또는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 제17조 규정에 의한 수시교육 및 재교육 등 교육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할 경우
-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23조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제26조 복장 규정 및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 제29조 규정에 따른 회계자료 통지 및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제30조 규정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제31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판촉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승인 없이 판촉 활동을 하거나 팜플렛, 리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을 제작하여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7조 제1항의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본 계약의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귀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2항 (해지 사유)

1. “갑”이 제5조에서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2. “갑”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4항 (즉시해지 사유)

1.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가.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을"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귀하는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3항 (즉시해지 사유)

1. "갑"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갑"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갑"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에 필요한 절차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60일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3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7-2)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 **500만원(VAT포함)**을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의 존속 중은 물론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귀하와 제3자의 명의(주주로 참여하는 것 포함)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소재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내 [삼겹살]과 동일 및 동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제한기간	제한지역
삼겹살을 주요상품으로 판매하는 외식업	가맹계약의 존속 중,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점포소재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내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①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5:00~24:00	연중무휴	※ 상권에 따라 사전협의

②귀하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게 휴업하기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사유가 정당할 경우 승인해드립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상권에 따라 상이	직접 근무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자

※ 권장 종업원 수는 상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 ①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뉴얼 등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에 의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위생상태, 회계관리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가 전항에 따른 점검이나 기타 가맹점의 재고·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당사가 필요 시 소집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가맹점사업자 회의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는 가맹점운영에 관하여 건실한 자금관리 관행을 가져야 하며 당사가 요구할 시 판매실적 등을 당사가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작성하여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 및 지역단 위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	-	-
	상품 광고 + 브랜드 광고	50%	50%	광고 계획 공고 → 광고실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절차 진행 → 광고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 광고비 확정	-
	상품 광고 +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50%	50%		
공동 판촉 활동	기획비용	가맹점에서 소요되는 판촉물의 제작비용 및 직접	행사계획 공고 →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실시 →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점사업자 선정하여 최종 부담액 확정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		
가맹점 개별 광고·판촉	-	100%	가맹본부에 광고·판촉계획안 발송 → 브랜드 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0조 (광고)
⑥ "을"은 자기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광고의 내용과 문안, 기타 시행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계약조문 제31조 (판촉)
②개별 판촉 활동은 "을"이 가맹점 오픈 후 단독으로 시행하는 판촉 활동으로서 "을"은 매장의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판촉 활동을 하여야 하며, 전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갑"의 지도와 통제가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 판촉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리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삼급살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 ① "갑"은 "을"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전항의 영업비밀에는 고사리볶음, 된장찌개, 육수, 파채소스, 멜젓소스의 제조방법, 고기 초벌시스템을 말한다.
- ③ "을"은 자신의 피고용인, 가족,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전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당해 행위자와 함께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며 "을"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 ④ 본 조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5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의 예정 등)

- ①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19조(경업금지 의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제23조 제1항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33조 제2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갑"이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을"이 제33조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갑"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서 금이천만원(₩20,000,000)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이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계된 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계약 종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을"은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별로 1일당 금삼십만원(₩300,000)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⑤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갑" 또는 "을"에게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갑" 또는 "갑"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상담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D-50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점포개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4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34
점포실측/설계	- 인테리어계약 체결	D-32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D-34	D-31~6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 기기장비 및 POS 조작 - 조리교육	D-20~10
개점 준비	- 인테리어 시설, 집기, 초도물품 등 본사 직원 및 점주 체크	D-2~1
개점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3조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갑"의 임직원 포함)과 "을" 양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 해결 노력을 한다. ② 양 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대한 소송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른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닐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가맹본부 비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가맹점 부담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해당사항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삼급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개점 전)	점포운영, 고객응대, 서비스, 조리교육 등	개점 전 직영점에서 개점 후 가맹점에서 실습교육	계약체결과 동시	필수 교육
수시교육 (개점 후)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자격부족에 따른 보완교육	실습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교육 전에 실비 및 교육시간 공지)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비용

귀하가 [삼굽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최초교육 (개점 전)	15일	1인 기준 500만원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 (개점 후)	교육에따라	가맹점사업자 부담	개점 후 필요시 실시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삼굽살"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5조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계약의 해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제10조 (개점 전 교육·훈련)

IX**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VAT 미포함)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 사업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가맹본부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2]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점사업자용)

[별첨4]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 보관용)